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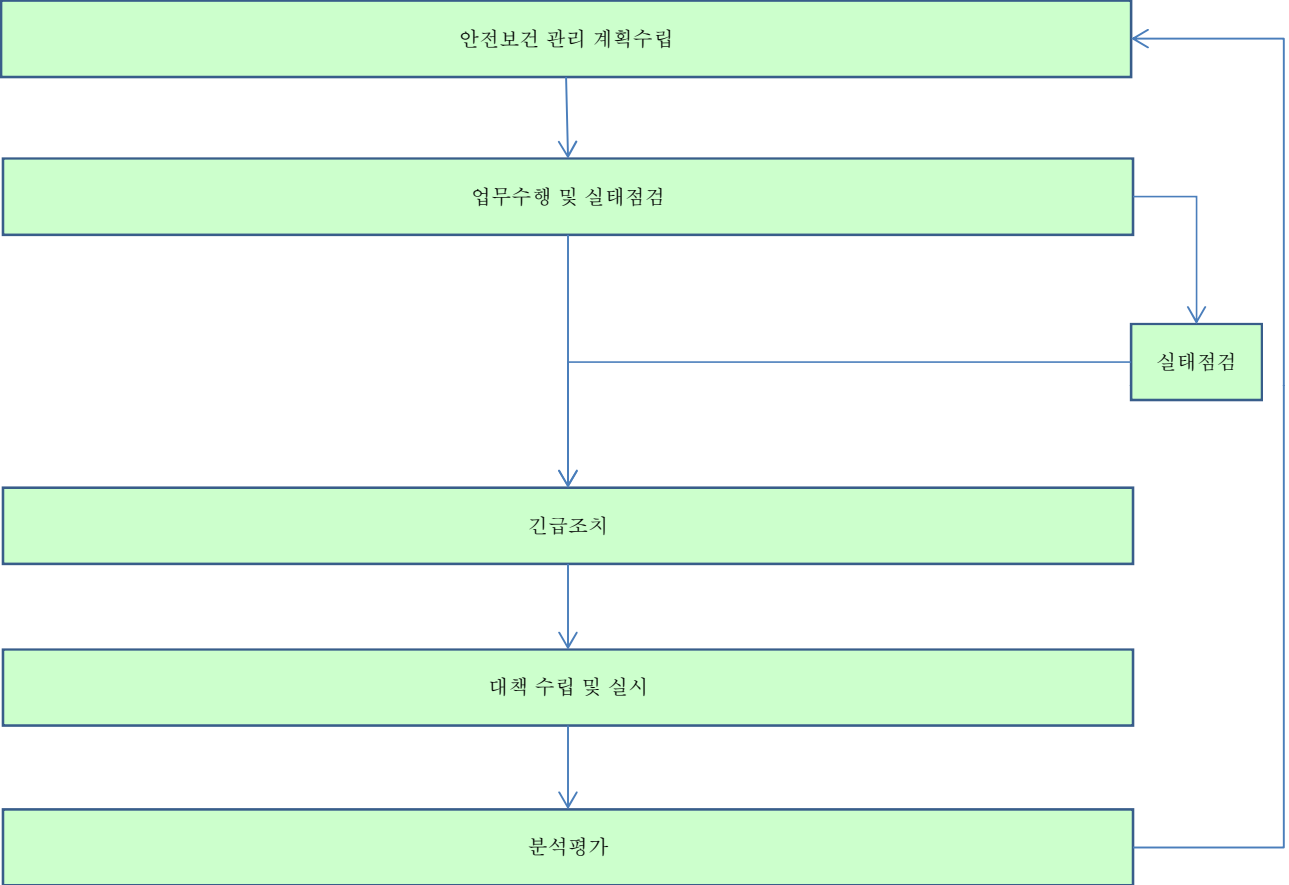
목적	본 절차서는 회사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세스 구분	<input type="checkbox"/> 고객지향 프로세스 <input type="checkbox"/> 지원 프로세스 <input type="checkbox"/> 경영 프로세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보건 프로세스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 근무하는 전임직원에게 적용하며, 하도급업체 및 작업자 그리고 방문자에게도 적용한다			프로세스 연관도		
제/개정 주관부서		총무팀	시행일자	2020.12.01	요구사항	ISO45001:2018 9.1	
프로세스 책임자	경영대리인	검토주기	1년	입력	안전보건 위험		
프로세스 성과지표				프로세스	안전보건법규관리프로세스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프로세스		
				기반조직	주관 : 총무팀 관련조직 : 전부서 인원적격성 : 학력-고졸, 경력1년		
				출력	보호구지급대장 월안전점검일지 안전사고보고서		
				측정 및 분석	안전보건사고율		

개정No.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	검토	승인
0	2014. 08. 01.	OHSAS 18001:2007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개정			
1	2020.11.30	ISO45001:2018 전환에 따른 개정			
			등록	검토	승인

 HIGH GAIN ANTENNA	프로세스명	프로세스ID	책임부서	발행일자	개정번호	페이지
	HGA3-OH-04	안전보건 관리 프로세스	총무팀	2020.12.01.	1	2/8

처 리 내 용 및 절 차

단계	총무팀	영업	품질보증	품질관리	생 산	개발	구 매	외부기관	입 력 (input)	출 력 (output)	성과 지표	관련 절차서
----	-----	----	------	------	-----	----	-----	------	-------------	--------------	-------	--------

 <pre> graph TD A[안전보건 관리 계획수립] --> B[업무수행 및 실태점검] B --> C[긴급조치] B --> D[실태점검] D --> A C --> E[대책 수립 및 실시] E --> F[분석평가] F --> A </pre>									안전보건 방침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월안전점검일지 교육훈련보고서		
									사업계획서	작업환경측정결과 건강검진결과		
									월안전점검일지 교육훈련보고서	안전사고보고서		
									안전사고보고서	기안서		
									월안전점검일지 교육훈련보고서 개선계획서	경영검토자료		



처 리 내 용 및 절 차

1. 책임과 권한

1.1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최종책임자로서 시스템의 실행,관리 및 개선에 필수적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1.2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사업본부장)

공장장을 회사내의 모든 장소 및 영역에서 요구사항이 적절히 실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1.3 총무 팀장

각 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인적, 물적 안전보건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1.4 근로자의 책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회사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절차

2.1 건강진단

1) 일반 건강진단

(1) 특수 건강진단 대상자 외의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하며, 그 목적은 일반적인 건강장애의 조기발견에 있다.

(2) 년 중 1회 이상 적절한 시기에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특수 건강진단

(1) 유해 위험업무(작업환경 측정 대상작업)에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 건강진단을 말한다.

(2) 작업환경측정 중 측정대상작업에 관련된 근로자 중 유해 작업자라 판단될 시 그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의뢰한다.

3) 임신 건강진단

유기용제,특정 화학물질등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작업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 중독의 여부 또는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임신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근로자의 건강진단 의무

(1) 당사의 근로자는 회사가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단 회사에서 지정한 의사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사에게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회사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처 리 내 용 및 절 차

6) 근로금지 대상자

-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
- (2)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 근로에 의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자
- (3) 정신분열증,마비성 치매,기타 정신질환의 증상이 있는 자

7) 취업제한 대상자

- (1) 납, 알킬납, 유기용제, 특정화합물질 등의 유해물에 중독되었거나 중독될 우려가 있는 자
- (2)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 (3) 방사선에 피폭된 자

8)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회사는 정기건강진단을 실시 후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 보건법 제 42조에 의거 년 2회의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 (1)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당해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2) 작업환경 측정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시행규칙 제 95조, 제 97조)에 의거 위탁 실시 한다.
- (3) 작업환경 측정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 (4) 대기환경에 대한 오염물질의 측정은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처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2.3 안전조치

1) 기계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기계,기구 및 기타 설비로 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한 조치를 강고한다.

- (1) 원동기,회전기에 의한 위험방지
- (2) 동력 차단장치
- (3) 운전개시를 앞둔 신호등을 정한다.
- (4) 가공물,절단찌꺼기 등 비례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 (5) 칼날소제, 또는 휴업을 전후한 청소때의 운전정지
- (6) 위험을 가져오기 쉬운부분에 덮개,울등의 설치
- (7) 작업모등의 착용



처 리 내 용 및 절 차

- (8) 장갑사용 금지장소의 명시
- (9) 기타 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
- 2) 폭발 및 화재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관리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 (1) 압축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 (2) 아세탈렌 또는 용접장치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
 - (3) 소화기
 - (4) 기타 안전에 관한 방지 조치
- 3)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 조치
 -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에 또는 전기안전 대행관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한 것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다.
 - (1) 전기 공작물에 대한 안전장치
 - (2) 배선 등의 절연피복, 외장에 대한 감전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 (3) 기타 전기에 관한 안전장치
- 4) 중량물 취급시 안전조치
 - 중량물취급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작업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 (2) 중량물 운반전 스트레칭을 실시 한다.
 - (3) 무거운 중량물(100kg) 인력운반은 반드시 2인이상 작업한다.
 - (4)경사면에서드럼통등의중량물을취급하는 때에는 구름멈춤대, 췌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한다.
 - (5)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을 갖추어 것
 - (6)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로프는 밧줄가닥이절단되거나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 (7) 무거운 중량물은 가능한 지게차 또는 호이스트 등 중량물 취급 보조설비를 활용할 것
 - (8)중량물을 적재할 때에는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 (9)중량물을 적재할 때 에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할 것
 - (10) 중량물 적재 높이는 2M을 넘지않도록 적재할 것



처 리 내 용 및 절 차

5)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조치

- (1) 유해가스, 증기 또는 먼지를 발산하는 작업자의 배기, 환기장치 설치 또는 기타 발산 억제 조치
- (2)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옥내 작업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 (3) 배기액중에 유독물이 포함된 경우에 흡수, 연소 또는 중화침전, 여과 기타 유효한 조치를 취한다.
- (4)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 대해 적절한 보호구, 보호안경, 마스크, 장갑, 신발 등 보호구를 비치도록 한 후 관리한다.
- (5) 보호구 사용을 지시 받은 종업원은 항상 유효 적절하게 그리고 청결하게 사용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소속장을 경유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한다.
- (6) 회사는 작업 상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배치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 바닥 및 벽에 대한 세척, 소독을 실시한다.
- (7) 종업원은 작업장의 청결에 유념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 외에 버려서는 않된다.
- (8) 작업장에는 부상자의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용구 및 재료를 비치하며, 안전관리자는 사용 방법을 종업원에게 주지 시킴과 함께 구급 용구류를 항상 청결하게 보관해야 한다.
- (9) 구급용으로서 포대재료, 핀센트 및 소독약, 화상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지혈대, 부록 환자용 운반구를 비치한다.

2.4 보호구의 지급

근로자의 작업시 신체의 일부로 직접 착용하여 각종 물리적, 화학적 위험 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조 기구로서 보호구를 지급하며, 지급되어지는 보호구의 종류 및 지급일등을 보호구 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2.5 안전 수칙의 주지 철저

작업자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 수칙을 명시하여 각 작업자가 숙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 안전보건교육

정기 교육은 매월 사무직 1시간, 근로자 2시간이상 신규 채용 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는 8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그 교육사항의 기록을 산업안전 보건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그 밖의 내용은 교육훈련프로세스에 따른다.

2.7 교육종류

1) 정기 안전교육

산업안전 보건법 제 31조 1항에 의한 교육

2)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 보건법 제 31조 2항에 의한 교육

3) 특별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 보건법 제 31조3항에 의한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교육



처 리 내 용 및 절 차

2.8 교육내용

- 1) 기계,기구의 위험성 및 취급방법
- 2) 유해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방법
- 3) 안전장치 또는 보호구의 취급방법
- 4) 작업 절차
- 5)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6)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예방방법
- 7) 사고시의 응급 처치 및 대피요령
- 8) 사업장의 정리,정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 9) 기타 업무와 관련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규정

2.9 위험 요소 보고

- 1) 작업자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소 및 잇차사고 경험이 있을 시 보고서 또는 제안서에 의해 이를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2) 작업자로부터 접수된 제안 및 개선방향을 포함한 보고서는 지속적 개선절차에 의해 평가후 포상을 실시한다.

3. 표준 및 기록의 관리

3.1 제. 개정 및 폐기

본 절차서의 제.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사내 표준관리 절차서 (HGA2-MP-06)에 따른다.

3.2 기록 및 보관

본 절차서에 관련하여 산출되는 기록은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차서 (HGA2-MP-07)에 따라 작성, 등록, 폐기 관리한다.

4. 부칙

4-1. 시행일

본 절차서는 2020년 12월 1일부로 개정 (REV. 01) 시행 한다.



HIGH GAIN
ANTENNA

안전보건 관리 프로세스

관리부문

총무팀

개정번호

1

문서번호

HGA3-OH-03

Page

8/8

양식 관리 기준 (통합/품질/환경/고객)

관련 업무 표준 문서

NO	양식명	양식번호	구분	관리부문	비고	NO	표준명	표준번호	비고
1	보호구지급대장	HGA2-OH-MP0301	양식	총무팀		1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프로세스	HGA2-OH-01	
2	월안전점검일지	HGA2-OH-MP0301	양식	총무팀		2	안전보건법규관리프로세스	HGA2-OH-02	
3	안전사고보고서	HGA2-OH-MP0301	양식	총무팀					